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장

제5호 2017. 2. 3(금)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7-12호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 1
- 남원시 고시 제2017-13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2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7-188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
- 남원시 공고 제2017-189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6

람										
---	--	--	--	--	--	--	--	--	--	--

지정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폐지

남원시 고시 제2017-12호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
 도로법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21조제3항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폐지

2017년 2월 3일

남원시장



구분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input type="checkbox"/> 폐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25	25
노선명	부절 ~ 평선	부절 ~ 월석
기점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2069-1도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2285-252도
종점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749천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749천
주요 통과지	동남원IC	동남원IC
총연장 (킬로미터)	5.541	6.329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 (킬로미터)	

남원시 고시 제2017 - 13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02월 03일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간사업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3. 사 업 비 : 자력사업
4. 사업내용

토지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적 (m ²)
성 명	주 소	시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m ²)	
윤**	남원시 요천로 **** *** ****	남원	이백	평촌	산5	임야	53,355	27,500

5. 사업기간 : 2017. 01. ~ 2018. 12. 31.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7 - 188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기금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조정, 사업범위 확대, 사후관리 조항 신설을 통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사업범위 확대 추가 신설(안 제3조)

나.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범위를 조정(안 제5호)

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여자금의 대여자금액 및 상환 기간·이자율 조정 (안 제8조제3호, 제4호, 제5호)

라. 기금을 용자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사업 또는 용도 변경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대여한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8조제2항)

마.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자금액 신설 및 상환 기간·이자율 조정 (안 제8조의2)

바. 자금의 대여 결정 조항 신설 (안 제8조의3)

사. 교육훈련 비용 지급 조항 신설 (안 제8조의4)

아.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 조항 신설 (안 제8조의5)

자. 신용보증 지급 조항 신설 (안 제8조의6)

차. 자활기금 지원금 사후관리 조항 신설 (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전화 : 063-620-6858, FAX : 063-620-6711)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 자활기금 담당자 유근후(전화 : 063-620-685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17 - 189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조례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규모 및 지급절차·반환절차·상환기간 연장 조항을 시행규칙에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 운용규모 조항 신설(안 제1조의2)
- 나. 채정보증에 필요한 관계서류 추가 : 신용보증서(안 제2조)
- 다. 기금 지급 절차 조항 신설 (안 제2조의2)
- 라. 기금 반환 절차 조항 신설 (안 제6조의2)
- 마. 용자금 상환 기간 연장 조항 신설 (안 제6조의3)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전화 : 063-620-6858, FAX : 063-620-6711)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 자활기금 담당자 유근후(전화 :
063-620-685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